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조(소유한 토지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소유한 토지”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제3자에게 임대(賃貸)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에 새로 구입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 등.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 가. 농업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나.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사망 하거나 뇌사판정을 받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사망 또는 뇌사판정 전에 치료를 목

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6.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

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제4조(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자료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정 기관·단체 등이 발급·등록하지 않는 자료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1개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휴경중인 농지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휴경중인 농지등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교육시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호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3항에 따라 신청·등록하는 자의 요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간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호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지등 소재지의 시·군·구(시·도를 포함한다)
2.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농촌진흥기관
3.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4. 국립한국농수산대학
5. 농식품공무원교육원
6. 그 밖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교육대상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하려는 자 및 등록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 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여 부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교육 실시·관리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그 밖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준) 영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1호, 제2 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10조(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① 영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4호에 따른 공동활동의 종류는 별표 4의 제4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활동시간, 활동 방법 및 증명방법, 활동 지역, 운 영 등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장관이 정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제11조(등록신청의 공고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군·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의 종료일까지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 내 구성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시 경작 농지등이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등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라 한다),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농지등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4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로써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밭농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로써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00000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로써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고 1997년 12월

-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 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소규모농가의 범위 내에 있는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이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산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농가의 범위 내에 있는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 등을 증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 나.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등록신청연

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등록신청연
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마.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농업 외의 종
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을 증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증명
하는 서류

4.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
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이하 "경작사실
확인서"라 한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
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
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
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6) 그 밖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의 모든 서
류

1)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5.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나목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제4조에 따른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의 농지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이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제3항제1호의 서류: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농지등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없는 경우

2. 제3항제2호의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전 연도에 제3조제1호·제2호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나. 직전 연도에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직전 연도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항제4호의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소지와 신청대상 농지등이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나. 신청대상 농지등이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로서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거나 직전 연도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에 주소지를 신청대상 농지등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의 통합접수를 공고한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로 본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로 읍·면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관리위원회(이하 “등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위원회 외에 리단위 마을에 경작사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등 소재지 읍·면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조에서 등록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해당 위원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이 조에서 등록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사항 조사) ① 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등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장(「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절통보서(이하 "등록거절통보서"라 한다)를 보내고,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과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증명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거절통보서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거절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등록거절통보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하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농지등의 변경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는 당해 년도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의 면적 및 이용정보(등록된 필지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제3항제1호의 서류

나. 제12조제3항제4호의 서류.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동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제4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다. 제12조제3항제5호나목·다목의 서류. 다만, 제12조제3항제5호나목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증표) ① 영 제1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0조(서류의 범위 및 보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관련된 서류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3. 농업경영정보 등록증
4. 농산물 판매 영수증, 종자·육묘 등의 구매서류, 농약·비료 등의 농자재 구매서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관련된 서류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월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가장 마지막에 등록(변경등록)한 서류를 말한다.

③ 그 밖의 서류의 범위 및 보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면적 상한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면적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5만제곱미터로 한다.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불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

2.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불금"이라 한다): 3회 지급

③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재배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라 한다)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기준 등) 영 제33조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6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물직불금"이라 한다)은 지급 대상자당 연간 1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자당 총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영 제36조에 따라 친환경축산물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친환경축산물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제28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물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물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 지원 자금 신청서를, 영 제36조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기준 등)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1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제31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40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 대상자의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참여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및 변경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등)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3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 50만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면적의 상한 외에 점검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기준 등)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등에 대한 세

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절 논활용직접지불제도

제35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제36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논활용직불금 등록신청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지 않은 경우: 1만제곱미터

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3.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37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논활용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활용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5조제1호 각 목의 농지 중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8조(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위원회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위원회 및 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논활용직불금위원회의 운영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사항 조사) ① 읍·면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인이 논활용작물 재배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여부 등 논활용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논활용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등) 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논활용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논활용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논활용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논활용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논활용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논활용등록증을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논활용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논활용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논활용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를,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제3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논활용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3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논활용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논활용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의 수정요청 및 논활용등록증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2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면적의 상한 기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다만,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면적 및 공동경작방식 등 공동 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

로 하되, 해당하는 법인 내에서 개별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은 30만제곱미터로 제한한다.

제43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장 보칙

제4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영 제36조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날

마. 논활용직접지불금: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영 제38조에 따라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마. 논활용직접지불금: 영 제52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이·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제1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의 직접지불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제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총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 지급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총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
8.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9. 논활용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농약관련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0항 중 제1

호·제4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1.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논활용직접지불제 이행점검 등 관리

4. 공익직접지불제 및 농업용 면세유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및 평가 등 관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익직접지불제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농업인 및 관계 행정기관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11.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12. 공익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 지원을 위한 분석·조사 연구

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제14호·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익직접지불제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공익직접지불제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6.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⑥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의 친환경농업보조금, 친환경축산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과

관련된 각 조의 전부 또는 각 조의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있는 어느 하나의 자료로서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던 농지등의 면적보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농지등의 면적이 줄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조건 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포함한다)을 등록한 농지등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가장 마지막에 등록되었던 농지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예시
가. 매매·상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 계약서 신고필증,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갖추어 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대장의 사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
다. 「농지법」과 관련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농지전용허가증,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발급된 농지전용신고증,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라. 그 밖에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증명 자료	

[별표 2]

휴경중인 농지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제5조 관련)

1. 영 제12조에 따른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영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신고 할 것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것
5.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6.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7.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1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별표 3]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제6조 관련)

1. 농약: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 나. 생산단계(이하 “저장단계”를 포함한다)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 다.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

[별표 4]

그 밖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준(제9조 및 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근거 법령	기준
1. 농업경영정보 변경신고 기준	영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1호	기본 정보, 농지등 정보, 재배품목 및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록할 것
2. 농지등 및 그 주변 폐기물 적정관리 기준	영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2호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및 관리할 것 가. 영농폐기물: 폐농약,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 폐영농시설자재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폐기물 나. 생활폐기물 등: 음식물 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폐목재 및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폐기물
3.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기준	영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3호	법 제12조 각 호의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관계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제출할 것. 이 경우 보관기간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등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종류	영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4호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생활폐기 물 공동 수거·처리 나.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다. 생태 교란식물 제거 라.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마.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활동
5. 농산물의 유해물질(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농약을 제외한다) 잔 류기준	영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5호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산단계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 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 질 잔류기준 나. 유통·판매단계의 유해물질 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 물의 유해물질 기준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금액(반환사유와 직접 관련된 지급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 불금 수령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의 면적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300%

2.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6]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나목은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선정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선정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 또는 수령을 한 경우	영 제33조 제1항제1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을 한 경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 제33조 제1항제2호	해당 농지등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연도 중에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연도에 「친환경농어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종료, 인증포기 등으로 연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지등(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친환경인증이 유효하지 못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지급 대상으로 한다)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연도에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된 농지등과 해당 부적격 통보가 지연되어 신청연도 이후에 부적격 결과가 통보된 농지등(다만,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된 농지등에 대해 이의신청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대상으로 한다)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해당 농지등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등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등의 친환경농

신청연도 중에 「친환경농 어업법」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이 유효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작물 재배와 관련이 없거나 토양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는 농지등 나)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 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 지등 다)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 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또는 버 섯재배를 하는 농지등 (다만, 토양관리가 이루 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포함한다) 라) 경운, 시비, 울타리 등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거나 식별하기 어려 워 면적 산출이 불가능 하거나 인증면적 불일 치 농지등 그 밖에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농지등		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 급	
---	--	---------------------------	--

[별표 7]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선정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선정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 또는 수령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영 제39조 제1항제1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 부 미지급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 부 미지급	3년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영 제39조 제1항제2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 부 미지급	
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영 제39조 제1항제3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 부 미지급	

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 제37조 제1항, 제38조제2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 제37조 제1항, 제38조제2항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간에 출하한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별표 8]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나목·라목은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다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선정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산정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영 제45조 제1항제1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 부 미지급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 부 미지급	3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영 제41조제1호	해당 농지의 경관보전직 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 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 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지법」 제36조·제36 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 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 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용 허가·협약이 의제(擬制)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41조제2호	해당 농지의 경관보전직 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 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	영 제41조제3호	해당 농지의 경관보전직 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의 경관보전직 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의 경관보전직	

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 개발지구의 농지 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마을 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파종 및 식재가 불이행된 경우 2) 재배 면적이 부족한 경우 3)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 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 는 경우 4)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5)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영 제40조 본문 단서 영 제4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 부 미지급 해당 농지의 경관보전직 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의 경관보전직 접지불금을 부족한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해당 농지별로 경관보 전직접지불금을 불량면 적에 비례하여 감액. 다 만, 불량면적 30% 미만 은 감액 없음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경관보전직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 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 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 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	--	---	--

[별표 9]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나목·다목·라목(라목 3)은 제외한다)은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다목 1), 2), 4)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영 제53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 제46조제2항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해 당 농 지 의 논활용	-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 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 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 당 농 지 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 「농지법」 제36조·제36 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 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 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 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 가·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 당 농 지 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4)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 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농 지 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 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 정지역의 농지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해 당 농 지 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 제47조제2항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논활용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4)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지급대상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우	영 제50조제1호		
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나)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1/2 미지급	-

2) 논활용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식량자급률 증진 또는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영 제50조제2호	해 당 농 지 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이행점검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영 제52조제1항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기본직접지불금(농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 번호	처리기간	90일
------	-----	------------	--------	------	-----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직접지불금(농활용직접지불금)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농업인)에게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			
②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주소지	(마을명)		농업인 번호 전화번호	
③ 경영주외의 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인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배우자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⑥-1 공익직불금의 “직불종류 선택”에서 “소농”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 1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를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 해당란에 √ 하세요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 해당란에 √ 하세요
배우자		—	① [] ② [] ③ [] ④ []			—	① [] ② [] ③ [] ④ []
		—	① [] ② [] ③ [] ④ []			—	① [] ② [] ③ [] ④ []
		—	① [] ② [] ③ [] ④ []			—	① [] ② [] ③ [] ④ []
		—	① [] ② [] ③ [] ④ []			—	① [] ② [] ③ [] ④ []

1 소농직불금은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농가) 내 모든 구성원을 작성합니다.
해당번호에 [V] 하세요 1 세대분리 하지 않은 구성원 2 세대분리(배우자) 3 세대분리(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4 세대분리(혼인 외의 사유로 3년 미경과자)
2 세대 분리기간이 혼인 외의 사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그리고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별도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규정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3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제출한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는 작성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4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5쪽)”에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과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처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인

⑥-2은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면적은 ⑤-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면적직불”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에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직불종류(소농 또는 면적) 선택 시 **1**의 면적을 초과하나 다른 요건(**1**~**4**)은 모두 충족하는 농가 중 면적직불금 금액이 소농직불금 단가보다 낮은 경우 직불종류(소농 또는 면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불 신청내역		면적직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진흥지역 안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합 계				

*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직불금 신청정보 입력·등록 과정에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논활용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진흥지역 안·밖		
합 계		

신청인 확인(동의)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확인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신청인1
신청인2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 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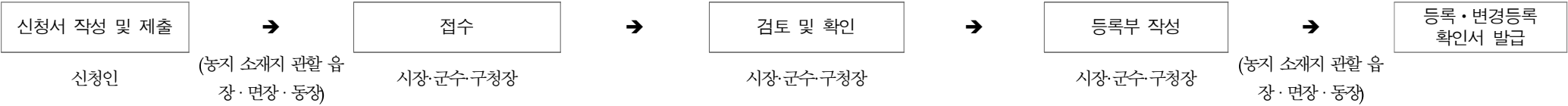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대표자)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대표자)을 말합니다.

※ 신청인명(생년월일)란에서 ‘소농’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지급대상자 중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는 2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외의 농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④란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는 소농직불금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내 모든 구성원**(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 제외)을 작성합니다. **세대 분리기간이 혼인 외의 사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그리고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별도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규정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인의 농지 및 농작물재배, 공익직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등록합니다.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3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5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구분 및 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

* ‘신청면적’란은 ⑤-3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진흥지역여부란은 농지소재지별로 진흥지역은 “○”, 비진흥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직불종류 선택(소농 또는 면적)’란은 신청인이 표 안의 1 ~ 4 까지 소농직불금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 경우는 해당란에 선택, 미해당된 경우는 미해당에 선택합니다. ‘직불종류’는 모두 ‘해당’일 경우에는 ‘소농’을 선택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을 선택합니다.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란 기본직접지불금의 신청자와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되므로 **농가 내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⑥-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선택직불금(논·밭)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밭작물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밭작물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품목·면적은 ⑤-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3란의 “신청인 성명”란은 면적직불금으로 등록된 농업경영주 또는 경영주의 농업인만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과 4.‘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3.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II.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그 외 증명서류는 I.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 가목, 다목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농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처리기간	90일
------	------	------------	------	-----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주소지 : (마을명 :)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농업인번호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불금 신청

⑤-1은 기본(면적) 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2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품목·면적은 ④-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1 농지일반					④-3 농지면적(㎡) A ≥ B+C+D						④-4 시설 현황		④-5 품목별 재배면적			⑤ 기본직불금 신청					⑤-3 실 경작자
번호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④-2지목		공부(A) A ≥ 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⑤-1 기본 (면적)			⑤-2 선택 (논활용)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신청 면적 (㎡) E ≥ B+C	논·밭 구분	진·흥 지역 여부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합 계																					

※ ⑤ ‘공익직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밭 구분은 농지소재지별로, 진·흥 지역 여부는 진·흥 “○”, 비진·흥 “×”로 표출됩니다.

※ ⑤-2란의 논·활용 재배품목은 ④-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며, ⑤-3은 법인 내 농지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작성합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소농직불 신청내역		면적직불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구 분	논활용 신청내역	
	신청면적(㎡)	예상금액(원)
진흥지역 안·밖		
합 계		

* 법인은 기본직접지불금의 ‘면적직불’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확인(동의)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확인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 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 ·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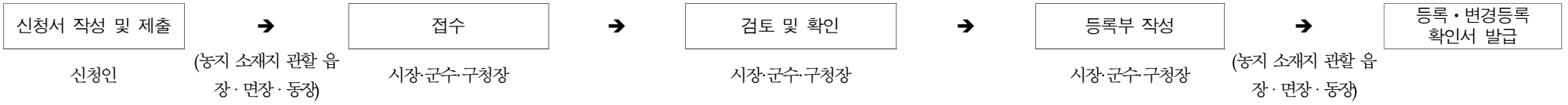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는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공익직불금 신청 : 해당 농업법인이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등록합니다.

④-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2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3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④-5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구분 및 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

- '신청면적'란은 ④-3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과 휴경(C)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진흥지역여부'란은 농지소재지별로 진흥지역은 "○", 비진흥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⑤-2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직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직불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④-5의 재배 품목 중 해당하는 품목과 면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3란은 법인 내 농지소재지별 실경작자를 기록합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과 4. '선택직접지불금 신청면적과 예상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불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3.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I.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 가목, 다목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기본: 소농()·면적(), 선택: 논활용()]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농지등 소재지			기본직불금 (소농·면적)			선택직불금 (논활용)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농지 소유자	합계 (진흥지역 안+밖)	진흥지역 안 (㎡) (논+밭)	진흥지역 밖 (㎡)		농지이용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논	밭	작물재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논활용직접지불금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지등의 논활용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제재부가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 제43조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번호 제 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절통보서

[소규모농가직불금(), 면적직불금()]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농지등 소재지			소규모농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신청면적(m ²)		합계	신청면적(m ²)		
					작물재배	휴경		작물재배	휴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거절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본: 소농()·면적(), 선택: 논활용()]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시행규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읍장·면장·동장) (귀하)

첨부서류 : 1. 등록거절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증명 서류

3. 그 밖에 신청자가 이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처리기간

45일

* 기타 변경신청 사항(계좌번호 등) :

음 · 면 · 동장
확인란

20 년 의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첨부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등(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제5~7쪽 참고)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확인**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형 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일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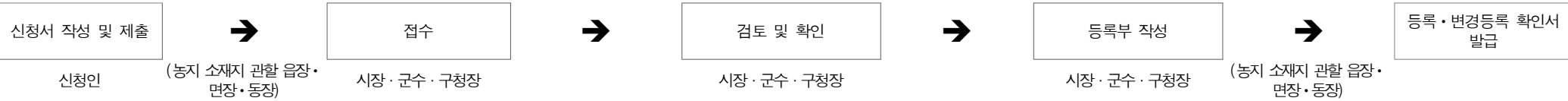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 이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의 면적 및 이용정보(등록된 필지 정보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 ②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①~⑥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농지가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공익직불금 변경신청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⑤-1란은 변경 전(前)의 기본직불금(소농, 면적)의 '논·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③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㉞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㉟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㊱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㉞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㉟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㊱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⑤-2란은 변경 전(前)의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변경 후(後)의 기본직불금(소농, 면적)의 '논·밭 구분'과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2란은 변경 후(後)의 선택직불금(논활용)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 작성합니다

직불금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I.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청: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4.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불금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5.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5) 버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6.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II.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외 증명서류는 I.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제5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농업인, 농업법인)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1 성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신청인2 성명)
(연락처)

(은 행 명)
(계좌번호)

② 농지일반

③농지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기본(선택)직불금 신청

⑥ 변경
사유

번호

농지등 소재지

농지
소유자

②-1 지목

공부

실제

공부(A)
A≥자경 + 임차

자경

임 차

기간
(. . .)
(~ . . .)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휴경
(C)

폐경
(D)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기본직불(소농·면적)

논발
구 분

신청
면적
(㎡)

⑤-2

선택직불(논 활용)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타 변경신고 사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란

수수료 없음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제5~7쪽 참고)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확인**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확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하거나, 준수사항(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직불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확인**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에서 차감(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
6. “**신청인 확인 사항**”에 확인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7.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 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형 직불제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기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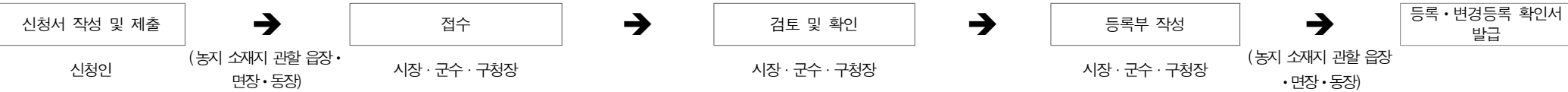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 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 변경등록 신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대표자)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불금)을 변경 신청하는 농업인(대표자)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대표자)을 말합니다.

－ 신청인별 연락처와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명(생년월일) 란에서 ‘소농’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으며, 해당 지급대상자 중 직불금 지급대상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직불금 신청인 또한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신청서 ②~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농지가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 매매(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②-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밭 여부는 자동표출)

－ ‘**논·밭구분**’ 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신청면적**’ 란은 ③ ‘농지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2란은 변경신고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재배품목과 신청면적을 필지별로 기록합니다.

－ ‘**재배품목**’란은 논활용에 해당하는 품목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논활용 재배품목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 작성합니다

직불금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I.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농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 2) 법 제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4.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3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단서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불금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5.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등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6.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법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후단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나.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 종합소득금액 등 서류

다.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지역거주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II. 선택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각 목의 해당 농지에 한함)

3.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36조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4.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외 증명서류는 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제5호 및 제6호 가목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행정기관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농자재판매처·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조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행정기관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녹색)

(뒤 쪽)

조사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조사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농자재판매처·출하처 등을 출입할 때에는 이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10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경영체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기본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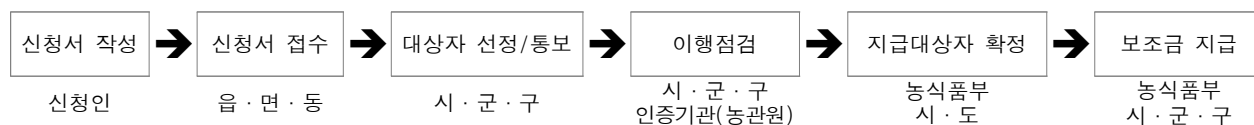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 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illegible]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기본직불제 대상여부(O, X)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경영체등록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택 전 화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친환경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HACCP 최초 인증일		친환경축산보조금 수급횟수		회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출하 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자 선정 통보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경영체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 향후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 지원 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량 (단위)	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원 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금 지급 지 급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변경사항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축사)주소			
	인증품목			
	사육두수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3.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변경사실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검토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자 선정 통보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개월
------	-----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을 신청합니다.

(전화:)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illegible]

작 성 방 법

처 리 절 차

[별지 제17호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참여(변경) 신청서(개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농지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경작시기 (파종~수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타		
	합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에 신청대상자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수수료 없음
근거 법조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경관보전직불금)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경관보전직접지불제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경관보전직접지불제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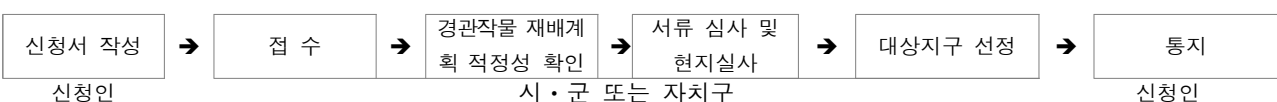
신 청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신청인” 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농지 소재지” 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3. “지목” 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4. “면적” 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경작시기” 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6.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변경) 통지서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지구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명	주소	대상면적(㎡)					지급보조금 예상액(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